# ---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- 검 토 보 고 ---

# 1. 제안 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현아 의원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957호

다. 발의일자 : 2015. 12.22.

라. 회부일자 : 2015. 12.28.

# 2. 제안 사유

- 현행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하위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」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나,
- 현행 조례에는 지하역사에 대한 유지기준만 있고 철도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,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 화하고자 하는 것임

# 3. 주요 내용

가.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」을 반영 하여 대중교통차량의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함.

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
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 붙임

비용추계 비대상

# 5. 검토 보고

#### 가. 개요

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과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관리지침」에 정해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검토의견

-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(이하 "법"이라 함)」제5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간에 대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)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환경부 고시인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 운행 관리지침(이하 "관리지침"이라 함)」에 규정되어 있는데,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권고기준이 포함되어 있음.
- 개정조례안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차량내의 실내공기질을 쾌적 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 판단됨.

<sup>1)</sup> 유지기준은 이를 지키기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, 권고기준은 강제성이 없음

- 개정조례안에서는 관리지침에 정해진 권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별표4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, 이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,
  - 별표 신설보다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·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.

# 관계 법령

##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

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③시·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·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·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해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"관리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」

**제8조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**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8조 관련)

1. 이산화탄소

레즈그트리라	권고기준		ui
대중교통차량	비혼잡시간대	혼잡시간대	비고
도시철도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노선 1회 운행 시
철도, 시외버스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평균값으로 평가

- 비고 1. "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"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. 이하 같다.
  - 2.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,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,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.

#### 2. 미세먼지

대중교통차량	권고기준	비고	
도시철도	<b>200</b> µg <b>/</b> m³	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	
철도, 시외버스	<b>150</b> μg <b>/</b> m³		